

보라매 2차 e편한세상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(홈페이지 게시용)

- ㈜대림산업 e편한세상 보라매 2차 제2018-02(2018.2.20.)호
- 유형 및 배정호수 : 총 9세대

지 구 (공급유형)	신청형	배정호수	비 고
합 계		9	
대림동 (민간분양)	59A	1	○ 입주자 모집공고 : 2018.2.27.(화) 예정 - http://www.daelimapt.co.kr/ ○ 공급처 : 시행)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, 시공) (주)대림산업 ○ 공급위치 :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17-49번지 일원 ○ 분양문의 : 주택전시관 ☎ 1566-3551
	59B	1	
	59C	1	
	84A	3	
	84B	1	
	84C	2	

- ※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(㎡)을 의미(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, 84형은 33평형 내외)
- ※ 상기 공급세대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별도 할당된 물량임

- 신청대상 : 신청일 당시('18.2.27)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
(세대주, 세대원,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)

※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

- 접수 및 신청 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장애인담당)
- 신청기간 : '18. 2. 22(목) ~ 2. 27(화) 18:00 방문 신청, 단 휴일은 제외
- 문의처 : 거주지 시·군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(장애인담당)
- 구비서류 : 특별공급 알선신청서, 무주택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읍·면·동 비치),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("주민등록번호", "세대구성사유 및 일자", "세대주관계", "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"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)
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

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)

○ 선정방법 : 주택알선 우선순위 **배점기준표**(아래 참조)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

-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>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>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> 세대원 수 점수 >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>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, 단,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(

예: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,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)

○ 신청시 유의사항

- 경기도 :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(최종 당첨자에 한함)

※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

- 경기도 :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,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

- 공급처 :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,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)

- 공급처 :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, 계약이 불가

○ 경기도 추진일정

- 공급처 → 경기도(2.20) → 시·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·접수(2.22~2.27) → 경기도 신청자 취합(2.28)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(2.28) →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(3.2) →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(3.5)

<참고자료 1>

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

평점요소	총 배점	배 점 기 준		비 고	
		기 준	점 수		
신청자 장애등급	20	1급	20	※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? - 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) ※ 단, 지적장애·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	
		2급	18		
		3급	16		
		4급	9		
		5급	7		
		6급	5		
무 주택 세대구성원 기간	30	10년 경과자	30	• 장애인 등록일로 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• 신청자거증 책임	
		8년 경과자	20		
		6년 경과자	10		
		4년 경과자	5		
		2년 경과자	2		
		2년 미만자	0		
세대원 중 장애인 유·무	10	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	2인이상	10	• 신청자 미포함*
			1인	5	
65세 이상인 장애인 유·무	5	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	5	• 신청자 미포함*	
세대원 구성	20	5인 이상	20	•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 인원(신청자 포함) -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에 한함 -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 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• 동거인 제외	
		4인	16		
		3인	12		
		2인	8		
		단독세대	4		
특별 공급 해당 지역 거주 기간	15	5년 이상	15	• 신청자의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·군(현재 장애등록일로부터 주민등록 기준)에서만 연 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, ※ <u>본 배점항목은 모든 시군 0점 처리</u>	
		4년 이상	12		
		3년 이상	9		
		2년 이상	6		
		2년 미만	3		
		거주기간 없음	0		

※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내 특별공급 신청 자격 제한

※ 신청자 미포함*은 다음을 의미함 (이하 같음)

- 장애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포함
- 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